

정 관

社團法人 定款 制定 1990.11.19.(環境部 長官 許可)
民法 第 30條의 規定
社團法人 定款 改定 1991.11.22.(環境部 長官 許可)
社團法人 定款 改定 1992. 5.30.(環境部 長官 許可)
社團法人 定款 改定 1994. 5.30.(環境部 長官 許可)
社團法人 定款 改定 1994.11.18.(環境部 長官 許可)
社團法人 定款 改定 1996.12. 6.(環境部 長官 許可)
社團法人 定款 改定 2005.12.22.(環境部 長官 許可)
社團法人 定款 改定 2009.12.07.(環境部 長官 許可)
社團法人 定款 改定 2011.12.08.(環境部 長官 許可)
社團法人 定款 改定 2013.12.31.(環境部 長官 許可)
社團法人 定款 改定 2014.12.31.(環境部 長官 許可)
社團法人 定款 改定 2021.10.25.(環境部 長官 許可)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소음진동공학회(The Korean Society for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 KSNVE)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학회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해 소음과 진동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과학과 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 학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학술논문집, 학회지 및 기술정보자료의 간행
2. 학술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3.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학술 교류
4. 방음, 방진에 관련된 시방과 기술에 관한 연구
5. 소음 및 진동에 관한 연구의 지도장려와 우수한 업적의 표창
6. 국제표준(ISO)에 기반한 민간 기술자격 인증
7. 국가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과의 산/학/연 협동
8.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4 조 (사무소 및 기구) 본 학회는 제 3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로 시행할 수 있다.

1.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2. 학회 내에 별도의 부설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5 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 ①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회 원

제 6 조 (회원의 분류)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된다.

1. 정회원,
2. 펠로우(Fellow),

3. 명예회원,
4. 특별회원,
5. 단체회원,
6. 학생회원

제 7 조 (회원의 자격) 각 회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단체나 개인으로 한다.

1. 정회원 : 정회원은 다음의 자격중 하나를 구비하고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 (1) 정규 대학에서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2) 전문대학에서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후 관련 분야 경험이 2년 이상인 사람
 - (3) (1),(2)항과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
2. 펠로우(Fellow) : 60세 이상 또는 20년 이상의 정회원으로 학회 공로 및 학문적 기여가 큰 사람
3. 명예회원 : 본 학회는 회원이나 비회원 중에서 본 학회의 발전에 공이 큰 사람, 또는 본 학회관련 과학 기술 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탁월한 사람 중 평의원회의 결의로 추대된 사람.
4. 특별회원 :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학회활동에 참여 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
5. 단체회원 : 본 학회의 논문집, 학회지, 기타 학술간행물을 정기구독 하고자 하는 단체
6. 학생회원 : 정규대학 또는 그 이하에서 소음 및 진동 관련 학문에 관심 있음이 인정되는 학생

제 8 조 (회비 및 회원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권리를 갖는다.
2. 회비는 입회비, 년회비 및 종신회비로 구분한다.
3. 입회비는 입회원서 제출시 납부하며, 년회비는 입회년도를 포함하여 년 1회 납부하고, 종신회비는 1회 납부로서 평생 회비가 면제된다.
4. 회비가 체납된 경우 회원의 혜택 및 권리가 제한된다.
5. 체납된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회원의 권리가 복권된다.

제 9 조 (제명) 회원 중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 하였거나,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할 수 있다.

제 10 조 (탈퇴) 본 학회 회원 중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원 사퇴서를 본 학회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탈퇴된다. 또한 본인 사망도 탈퇴로 간주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1 조 (임원의 정수) 본 학회는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약간 명을 포함한 이사 15인 이상 50인 이내와 감사 2인을 둔다.

제 12 조 (임원의 선출 및 해임)

1.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임원이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와 본인의 사정에 의해 사임할 경우 평의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3. 수석부회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 1인에 대해서 평의원회는 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 수석부회장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4. 평의원회에 추천된 후보가 '부'로 의결된 경우, 수석부회장추천위원회에서는 새로운 후보 1인을 추천한다. 두 번째로 추천된 후보에 대해서도 '부'로 의결된 경우에는 새로운 수석부회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석부회장 선출 절차를 다시 밟는다.

제 13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임원중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1년에 1명씩 선출한다.

제 14 조 (회장 및 이사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여 총회, 이사회 및 평의원회를 주재한다.

2.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당해 연도 수석부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기년도 회장 직을 자동승계하며, 차기년도 사업계획을 주관하여 수립한다. 회장 유고시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직제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하며, 수석부회장 유고시에는 정관 제12조의 3, 4항의 절차를 새로 밟는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5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재산 사항을 감사
2. 임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임원 및 평의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 16 조 (임원의 성격) 각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제 4 장 총회 및 평의원회

제 17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의 승인
4. 임원의 인준
5. 평의원의 인준
6. 기타 중요 사항

제 18 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1월말 전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평의원회의 결정에 의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한다.

제 19 조 (총회의 의제) 회장은 평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다음 사항을 정기총회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

1. 전년도 결산 및 차년도 예산
2. 전년도 말 현재의 재산 목록
3. 사업의 실적 및 계획

제 20 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총회는 위임을 포함하여 정회원 10분의 10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원이 전자우편 등으로 위임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는 성회를 위한 출석으로 간주한다. 다만, 의결권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2. 명예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 학생회원은 의결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 21 조 (총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평의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정회원 10분의 10이상의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제 22 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본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23 조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전년도 말 현재의 재산 평가
2. 사업의 실적 및 계획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
4. 학회 지부의 설치
5. 위원회의 설치

제 24 조 (평의원회 구성 및 평의원의 선출과 임기) 본 학회의 운영에 대한 정회원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1. 평의원회는 정회원수의 10분의 1 이내의 평의원으로 구성 한다. 단, 최소인원은 60명으로 하며, 그 선출 방법은 세칙으로 정한다.
2. 평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연임 할 수 있다.

제 25 조 (평의원회 의결방법)

1. 평의원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의안을 명시 하여 개최일 10일 전에 모든 평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평의원회 의결은 정관 제 24조에 규정된 최소인원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3. 평의원이 전자우편 등으로 위임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는 성회를 위한 출석으로 간주한다. 다만, 의결권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26 조 (이사회회의 구성)

1.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 의장은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순으로 하며, 부회장은 직제순에 따른다.

제 27 조 (이사회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 학회 운영에 관한 총무, 사업, 연구, 편집, 예산결산, 학술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평의원회에 의하여 위임 받은 사항
3.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8 조 (이사회 소집 및 의결 정족수)

1. 정례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다만, 전자우편 등으로 위임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를 성회를 위한 출석으로 간주하고 의결권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3. 이사회는 이사회 출석인원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자 산 및 회 계

제 29 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재산에서 생기는 수익
3. 사업에서 수반되는 수익
4. 기부 또는 보조금
(기부금에 관하여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5. 기타수입

제 30 조 (사업계획 및 예산) 학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전까지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거쳐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 31 조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준한다.

제 32 조 (세입세출 예산) 본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사업계획서와 함께 매 회계년도 개시일전 까지 평의원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 33 조 (위원회)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칙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 34 조 (해산) 본 학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거쳐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5 조 (정관 개정)

1. 정관 개정의 발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정회원 10분의 10이상의 동의
- (2) 재적 평의원의 3분의 10이상
- (3) 이사회 의결

2.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6 조 (준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37 조 (잔여재산 처리)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총회 의결을 거쳐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부 칙

- 1. 본 정관 개정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2. 본 정관은 1994년도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